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Magic Account

Magic Account

1

1

.(“ ”, (請約) “ ”, (承諾) “ ”)
가
(가 , , ,)
.
, 1
(“ ”) , (30 (30
, 가
가 1
” , (“
가)+1%
가 1

2

.(
“ ”)
1. 가 (3) 1
가
2. 가
1
.(“ ” “ ” “ ”
”)
2 “ 가
” 65
2 3 가
”

3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철회(撤回)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약관대출이율(이하 “약관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4

가 () ,
가 ,
가 ,
가 1 ,
() 2 10 가
3
2
1. , 가 , 가
2. 1 가
2

5

가
1.
2. 15 , (心神喪失者) (心神薄弱者)

6

1.
2.
3. (“ ”)

4. 가 1 1 , 가
 20 () 1
 가 1 2 . ,
 1.
 2. 가 가 가
 가 1 3 가 .

7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8

가 1 가
 가
 1 가 ,
 .

9

-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연령은 보험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제5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연령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연령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단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 일에 연령이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2 ()

10 1

- 1 가 1 (1 가
) , 1
 1 1
 . (1 “
 ” 가 , 1 가
 2 가
 1. 24 () 가
 2. 23 () 가
 가

가

가

11 2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 날(이하 “납입기일”이라 합니다)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 합니다.
- ②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약정한 기본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총납입 기본보험료의 2배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으며, 납입기간 중에는 연간 납입 기본보험료의 2배를 초과하여 납입할 수 없습니다.

12

- ① 계약자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4조(약관대출)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해약환급금(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2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3

가 2

, 3

가

1

가

3

1

, 가

()

15

1

2

가

()

가

15 ()

1 20 () 1

14

①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復活)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3조(계약전 알릴의무),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를 준용합니다.

3 ()

15

가

가

(1 “ ”)

1. 가 1 가

:

2. 가 1 가

:

16

15 () 2 가

, , 27

() 2 (4)

(“ ”)

가

15 () 2

180 180

2

(2) 가

()

17

가

가

(解止)

1. 가
, 가
() 2
1 가
2. 가
, 가
3. 가
1 가
1. 1 1
2. 1 2
3. 1 3

18

회사는 피보험자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수가 보험료 산출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19

- ① 이 보험에서 적립계약의 순보험료에 대한 부리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20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연단위복리 3.0%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은 제19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21

이 계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22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3

()
 “ ”) . 3 ()
)

24

가 23 () 가
 . ,
 가
 1. 가
 2. 가 1 2 (1)
 3. 가
 () (가
)
 4. (“ ”)가
 1 가
 가 , , ,
 1
 “ ”
 .
 1 , , 가
 23 () 가 1

25

회사는 책임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책임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26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27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익자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제2호의 경우는 피보험자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시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28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29

수익자는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0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 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31

30 ()

3

10

15 () 1 가
 가 7 , 1 “ ”(2)
 , 24 () 1
 ,
 가 1
 가 ,
 ,
 가 가
 1 가 가 , ,
 () ,
 가 가 가 ,
 ,
 가 가
 3 가 3 “
 가 3 “ 3 ” ,
 가
 1 5 ,
 가 ,
 ,

32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5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2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33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질병에 관한 정보

34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약관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약관대출금과 약관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3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약관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날에 해약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35 가

가 (“ 가 ”) , 36 (“ 가 가 (“ ”) 가
) , 5 (“ ”)
 “ 가 ”, “ , “ ” “ ”, “ ”, “
 ” 가 .
 55 65 가 ,
 .

36

가 .
 1. : 60
 2. : 60
 , 50 가 .
 3. : 가 14 3
 가 5
 1 2
 1 () 2 , 23 (.
), 24 () 25 (.
)
 15 .
 가
 가 .
 ,
 1 가
 가 ,
 .

가

37

1. 가
가
2. 가
3. 가
(殘餘)
4. 가
5. 가
(x12)

38

1. 가
2. 가
(合算)

7

39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0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41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42 가

모집인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 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43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44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45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별표 1 】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만기축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 까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을 경우	적립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15배 해당액과 그 당시의 적립액

- 주) 1. 적립액이란 이 계약의 적립계약 순보험료를 공시이율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에서 이 계약의 위험보험료, 사업비 및 부가특약 보험료를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차감하고 부리적립한 금액입니다.
2.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합니다.
3. 이 보험의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3.0%로 합니다.

【 별표 2 】

(31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15조 제2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 이율
만기 축하금 (제15조 제1호)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 부터 보험금 청구일 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 기간 : 1%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 환급금 (제20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공시이율의 50% - 1년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 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2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별표 3 】

등급	신 체 장 해
제1급	1. 두눈의 시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항상 간호를 받아야 할 때 5.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8.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고,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고, 한팔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제2급	1.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2.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애를 남겨서 평생토록 수시 간호를 받아야 할 때 3. 한팔 및 한다리를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10손가락을 잃었거나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5.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의 신체장애가 생기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 중에서 제3급의 2 내지 7 중 또는 제4급의 5 내지 11 중에서 신체장애가 발생 되었을 때 6. 두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제3급	1. 한눈의 시력을 영구히 잃었을 때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3. 한팔 또는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5. 한다리 또는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5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손가락을 잃었을 때

등급	신 체 장 해
제3급	8. 10발가락을 잃었을 때 9. 척추에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0. 한팔 또는 한다리 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있고 다른 한팔 또는 한다리중 제4급의 5 또는 6의 신체장해가 발생하였을 때
제4급	1. 두눈의 시력에 각각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중추신경계 또는 정신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을 때 4. 흉·복부 장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겨서 평생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되었거나, 양쪽고환을 잃었을 때 5.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다리가 영구히 5cm 이상 단축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잃었을 때 10. 한손의 5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2. 10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3. 한발의 5발가락을 잃었을 때 14. 한귀의 청력을 영구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15. 척추에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6.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제5급	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때 2. 한팔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 중 2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잃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잃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3손가락을 잃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등급	신 체 장 해
제5급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중 1손가락을 포함하여 3손가락 이상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9. 한발의 5발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발가락 내지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1. 두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2. 한귀의 청력을 완전영구히 잃었을 때 13. 코가 결손되거나 또는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14.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출증은 제외) 15. 두부 및 안면부에 현저한 추상을 남겼을 때 16.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제6급	1. 한눈의 시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2. 한팔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3. 한다리의 3대관절 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겼을 때 4. 한다리가 영구히 3cm이상 5cm미만 단축되었을 때 5.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6.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손가락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7. 한손의 첫째손가락 및 둘째손가락 이외의 2손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8. 한손의 첫째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 이외의 1손가락 또는 2손가락을 잃었을 때 9. 한발의 첫째발가락 또는 다른 4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포함하여 3발가락 이상을 완전영구히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11. 한 귀의 청력에 뚜렷한 장애를 남겼을 때 12. 두부 및 안면부에 추상을 남겼을 때 13. 성기능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14.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 장애등급분류 해설 』

1. 장애의 정의 및 평가기준

가. 장애의 정의

장애란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나. 평가기준

- 장애의 평가시 하나의 장애가 두 개 이상의 등급분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 신체의 제관절 운동의 정상 각도는 미국의사협회(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 지침 제4판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측정방법 또한 이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계약자 선택에 따라 그 외의 A.M.A 지침에 의한 장애진단내용도 인정될 수 있다.

2. “일상생활 기본동작의 제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중 하나 이상에 제한은 있으나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장구(휠체어, 목발 등)가 필요치 않은 상태를 말한다.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 (1) 이동동작
- (2) 음식물 섭취동작
- (3) 옷 입고 벗기 동작
- (4) 배변, 배뇨 또는 그 뒷처리
- (5) 목욕

3. “항상간호”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제한을 포함하고, (2) 내지 (5)의 항목 중 2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항상 타인의 수발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4. “수시간호”

“수시간호”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중 (1)의 이동동작의 제한을 포함하고,
- (2) 내지 (5)의 항목 중 1개 이상이 제한되거나, 치매 또는 정신질환 등으로 수시

로 타인의 수발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1)의 이동동작 제한 정도는 침상을 벗어나는 이동시 타인의 수발이나 보조수단(휠체어 등)이 반드시 필요한 정도를 말한다.

- 2) 심장,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또는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 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5. “시력을 잃은 것”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단, 시력장해가 아닌 시야장해, 안구운동장해 등의 눈의 장해는 제외한다.

6. “시력의 뚜렷한 장해”

국제식 시력검사표에 의하여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망막 또는 시신경손상이 증명되고 회복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시야장해, 굴절장해, 안구운동장해, 조절장해, 복시 등은 이에 준하여 평가한다.

7.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을 잃은 것”

가. “말의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이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1) 말과 소리내는 기능 장애로서 구순음(ㄱ, ㄴ, ㄷ), 치설음(ㄴ, ㄷ, ㄹ), 구개음(ㅈ, ㅊ), 후두음(ㅇ, ㅎ)중 3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2) 뇌언어 중추의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으로서 음성언어에 의한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 3) 성대 전부를 떼어냄으로써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나. “씹어먹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물이나 유동식(미음 등)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8. “말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뚜렷한 장해”

가. “말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말과 소리를 내는 기능의 장애로서 구순음, 치설음, 구개음, 후두음 중 2종류 이상의 발음이 불가능하고 그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나.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영구히 남긴 것”

죽 또는 이에 준하는 음식 이외의 것은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써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9. “청력을 완전 영구히 잃은 것”

주파수 500, 1000, 2000, 4000 헬스의 경우에 청력 상실의 정도를 각각 a, b, c, d 데시벨(청력검사 단위)로 했을 때 $1/6(a+2b+2c+d)$ 의 값이 8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귓전에 접하여도 큰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0. “청력의 뚜렷한 장애”

위의 방법에 따른 값이 60데시벨(청력검사 단위) 이상(40cm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해독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1. “코의 결손과 뚜렷한 장애”

코뼈가 결손되거나 또는 후각 기능을 잃고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2. “팔다리를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팔다리의 운동기능을 완전히 잃은 것을 말하며, 팔다리의 완전 운동 마비 또는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팔은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다리는 골반관절, 무릎, 발목)의 완전 강직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관절을 영구히 쓸 수 없는 경우(인공관절 포함)에도 이에 준한다.

13. “팔다리 관절의 뚜렷한 장애”

팔다리 각각의 3대관절의 운동방향이 A.M.A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에서 명시한 주운동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frac{1}{2}$ 이하로 제한되거나, 한 관절의 운동종류별 정상운동범위에 대한 장애후 운동범위의 값에 비례치를 곱하여 산출한 각 값의 합(Σ 운동종류별 장애후 운동범위 / 운동종류별 정상 운동범위 $\times$ 비례치)이 $\frac{1}{2}$ 이하로 제한된 경우와 고정장구의 장착을 수시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동요관절의 경우를 말한다.

14. “척추의 뚜렷한 기형 또는 운동 장애”

피보험자의 척추의 기형 정도와 운동가능 영역을 정상인의 운동영역과 비교하여 아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가. “척추의 고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나. “척추의 중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후만증 또는 10° 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 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한다.

다. “척추의 경도의 기형”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한다.

라. “척추의 고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frac{1}{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마. “척추의 중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frac{1}{2}$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바. “척추의 경도의 운동장애”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frac{3}{4}$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의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5. “손가락의 장애”

가. “손가락을 잃은 것”

첫째손가락은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기타의 손가락은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 이상을 잃은 것을 말한다.

나. “손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손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frac{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수지절관절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2) 기타 손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수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6. “발가락의 장애”

가. “발가락을 잃은 것”

발가락 전부(첫째발가락의 경우 말절골 이상)를 잃은 것을 말한다.

나. “발가락을 완전 영구히 사용하지 못하는 것”

(1) 첫째발가락의 경우 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마디) 하방의 $\frac{1}{2}$ 이상을 잃거나 또는

지절간관절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2) 기타 발가락의 경우 원위지절간관절(끝에서 첫째 마디) 이상을 잃거나 또는 중족지절관절(끝에서 마지막 마디) 또는 근위지절간관절(끝에서 둘째마디)이 생리적 운동영역의 $\frac{1}{2}$ 이하로 제한되어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17. 두부 및 안면부의 추상

가. 현저한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 길이 10cm 이상 또는 직경 5cm 이상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나. 추상

두부 또는 안면부에 최대길이 5cm 이상 10cm 미만 또는 직경 2cm 이상 5cm 미만의 추상반흔 또는 조직함몰이 된 경우로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반흔이나 함몰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18. 성기능의 영구적 장애

음경의 결손, 반흔 또는 경결 등으로 음위(陰痿 : 발기부전)가 있거나 반흔으로 인한 질구협착 등으로 성교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19.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고도의 추간판탈출증”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

나. “중도의 추간판탈출증”

-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다. “경도의 추간판탈출증”

감각이상 ·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

20. 신체의 동일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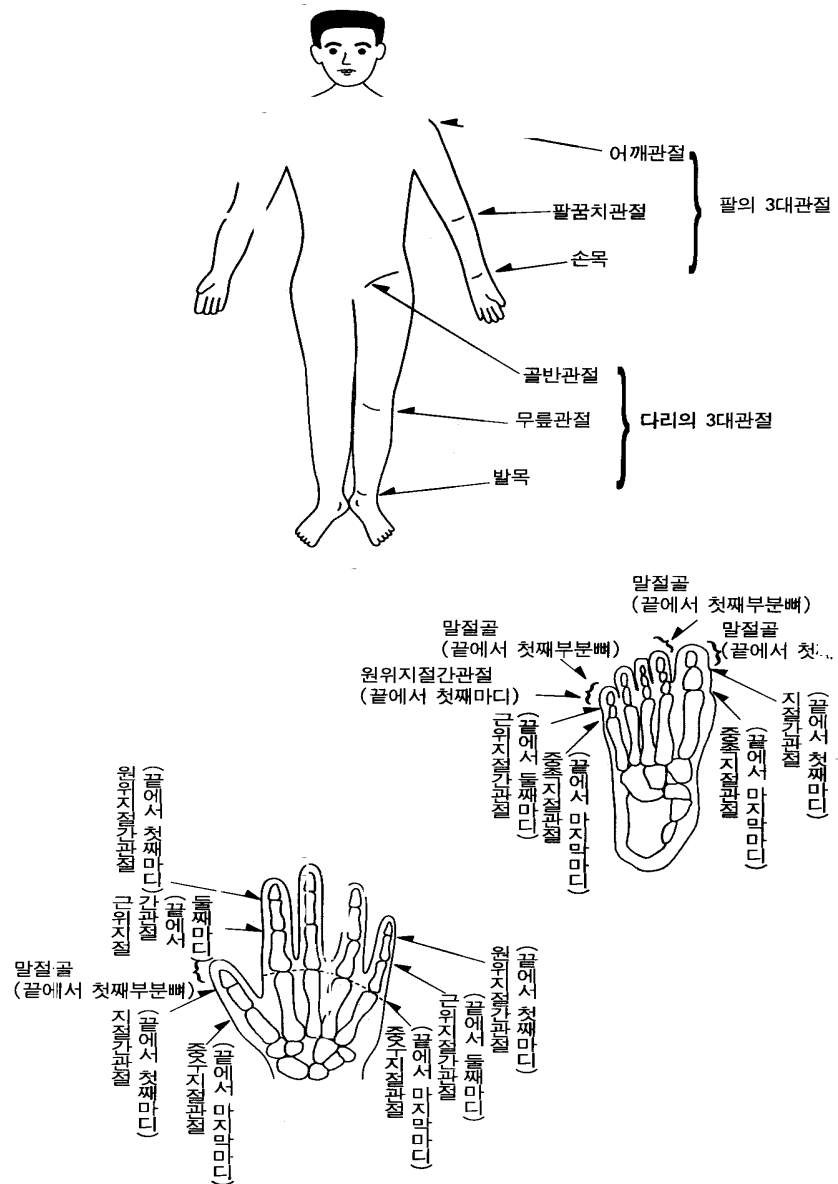
- 가. 한팔에 대하여는 어깨관절 이하(손가락, 손목 이하, 팔꿈치 이하, 어깨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나. 한다리에 대하여는 골반관절 이하(발가락, 발목 이하, 무릎 이하, 골반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다. 눈 또는 귀의 장애에 대하여는 두눈 또는 두귀를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 라. 척추에 대하여는 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 부위라 한다.
- 마.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5, 6, 7, 8, 9, 제2급의 3, 4, 5, 제3급의 8 또는 제4급의 12의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는 두팔, 두다리, 한팔과 한다리, 10손가락 또는 발가락을 각각 동일 부위라 한다.

21. “영구히”

“영구히”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 가.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 나. 장래에 일정기간 경과 후 호전가능성의 유무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 다. 장애의 호전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장애확정시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신체 부위도



【 별표 4 】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로서 다음 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 이 분류는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에 의한 것임.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1. 운수사고에서 다친 보행자	V01 ~ V09
2. 운수사고에서 다친 자전거 탑승자	V10 ~ V19
3. 운수사고에서 다친 모터사이클 탑승자	V20 ~ V29
4. 운수사고에서 다친 삼륜자동차 탑승자	V30 ~ V39
5. 운수사고에서 다친 승용차 탑승자	V40 ~ V49
6. 운수사고에서 다친 픽업트럭 또는 밴 탑승자	V50 ~ V59
7. 운수사고에서 다친 대형화물차 탑승자	V60 ~ V69
8. 운수사고에서 다친 버스 탑승자	V70 ~ V79
9. 기타 육상운수 사고	V80 ~ V89
10. 수상 운수사고	V90 ~ V94
11. 항공 및 우주 운수 사고	V95 ~ V97
12.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운수사고	V98 ~ V99
13. 추락	W00 ~ W19
14. 무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20 ~ W49
15. 생물성 기계적 힘에 노출	W50 ~ W64
16. 불의의 물에 빠짐	W65 ~ W74
17. 기타 불의의 호흡 위협	W75 ~ W84
18. 전류, 방사선 및 극순환기온 및 압력에 노출	W85 ~ W99
19. 연기, 불 및 불꽃에 노출	X00 ~ X09
20. 열 및 가열된 물질과의 접촉	X10 ~ X19
21. 유독성 동물 및 식물과 접촉	X20 ~ X29
22. 자연의 힘에 노출	X30 ~ X39

분 류 항 목	분류번호
23. 유독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X40 ~ X49
2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요인에 불의의 노출	X58 ~ X59
25. 가해	X85 ~ Y09
26. 의도 미확인 사건	Y10 ~ Y34
27. 법적개입 및 전쟁행위	Y35 ~ Y36
28. 치료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 약제 및 생물학 물질	Y40 ~ Y59
2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	Y60 ~ Y69
30. 진단 및 치료에 이용되는 의료장치에 의한 부작용	Y70 ~ Y82
31.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 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Y83 ~ Y84
32.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제5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재해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 다음 사항에 의한 사고의 경우에는 재해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약물 및 의약품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외용약 또는 약물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피부염(L23.3)
2. "기타 고체 및 액체물질, 가스 및 증기에 의한 불의의 중독" 중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A00 ~ R99에 분류가 가능한 것
3.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4. "자연 및 환경요인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5. "익수, 질식 및 이물에 의한 불의의 사고"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애 및 삼킴장애
6. "기타 불의의 사고" 중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
7. "법적 개입" 중 처형(Y35.5)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A1) [. . .]
(. . .)

1

1

諾) 가 (請約) 가 (承
가 .(“ ”,
“ ”,
1
가
,
가
1. 가
2. 가 (가
(3) 1 가
, 27 () 2
(4) (“ ”)
가
3. 15 () 가
4. 2 ()
4 가

2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3. 자녀형의 경우 특약체결시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선택한 자녀(직계비속 포함)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자녀인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해지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3 가 12 () 1
 ,
4 가
 가 가 17 () 1

- 5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6 가 5 , 1 () 2 가 1
 ,
7 가
 (“ ” 3) (“ ” 5) 15
 , 9 ()
 (“ ”)
 (30) 가 30
 30 가 1

8 15 가
 9 (“ ”)
 1 (가 12 (가) 1

1
80 , 24

2 ()

9

1 가 , 1 (1
) , 12 (1
) 1
90 ,
2
90

10

1 , 가
17 () 1

11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제9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3 ()

12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3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4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경계성 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5

가 ,
가 1 (“ ”
) (1) .

16

, 가 가
15 () 가 , , 1 , 가
1 가 , 12 () .

17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8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8 ()
3
10
1
“(2)

20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구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 이후에 최초로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신규형	경과기간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중도형, 갱신형			1,0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신규형	경과기간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중도형, 갱신형			1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신규형	경과기간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중도형, 갱신형			1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신규형	경과기간	1년미만	100만원
				1년이후	200만원
		중도형, 갱신형			200만원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2.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입니다.
3. 중도형 및 갱신형의 경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도형은 보장변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갱신형은 갱신일을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 별표 2 】

(19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진단자금 (제15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7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 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가슴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C41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3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2. 갑상샘 및 기타 내분비샘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3. 불명확한, 속발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15. 독립된(원발성) 다발성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6 】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상피내 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 소화기관의 상피내 암종	D01
3. 가운데귀 및 호흡기계통의 상피내 암종	D02
4. 상피내의 흑색종	D03
5. 피부의 상피내 암종	D04
6. 유방의 상피내 암종	D05
7. 자궁목의 상피내 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 생식기관의 상피내 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상피내 암종	D09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7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가운데귀, 호흡기, 가슴내 장기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진성 적혈구 증다증	D45
10.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6
11.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기타 신생물	D47
1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A1) [. .]
(.)

1

1

諾) 가 (請約) 가 (承
가 .(“ ”,
“ ”)
1
가
.
가 가
1. 가
2. 가 (가)
(3) 1 가
, 27 () 2
(4) (“ ”)
가
3. 14 () 가
4. 2 ()
4 가

2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3. 자녀형의 경우 특약체결시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선택한 자녀(직계비속 포함)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자녀인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해지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3

가 12 () 1

4

가

가

가
가

16 (

) 1

5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6

가

5

, 1 (

) 2

가

1

7

가

(“ ” 3)

5

(“ ”) 15

,

(“ ” (“ ”)

)

,

(

“

”

)

(
30

)

30

가

가 1

8

15

9 ()

(

“

”

)

1

가

12 (

) 1

가

1

2 ()

9

1 가 1 (1) , 11 () 1) 1 90 , 2 90 .

10

1 16 () 1 가 .

11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제9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3 ()

12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3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암”이라 함은 본인형 및 배우자형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특정4대암”을, 여자인 경우에는 “여성특정3대암”을, 자녀형인 경우에는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이하 “특정4대암”, “여성특정3대암” 및 “고액치료비관련암”을 “특정암”이라 합니다)

1. “특정4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4대암 분류표” (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2. “여성특정3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특정3대암 분류표” (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3.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 (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②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4

가 (1 “ ”) (1).

15

가 , 가
가 ,
14 () 가
1 가 ,
1 가
1 가
1 ,
.

16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17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8

17 ()
3
10
1
“(2)

5

19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 일 이후에 최초로 특정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1회한)	신규형	경과 기간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중도형 · 갱신형			1,000만원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2.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3. 중도형 및 갱신형의 경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중도형은 보장변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갱신형은 갱신일을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4. 특정암
 · 피보험자 남자 : 특정4대암(간암, 위암, 폐암, 대장암)
 · 피보험자 여자 : 여성특정3대암(위암, 자궁암, 난소암)
 · 자녀형 : 고액치료비관련암(백혈병, 뇌암, 뼈 및 관절연골암)

【 별표 2 】

(18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진단자금 (제14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6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애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암진단특약(별표5)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
[기타피부암제외]와 동일

【 별표 6 】

4

특정 4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위의 악성신생물	C16
2. 결장의 악성신생물	C18
3. 직장 S상결장 접합부의 악성신생물	C19
4. 직장의 악성신생물	C20
5.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신생물	C21
6. 간 및 간내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7. 담낭의 악성신생물	C23
8. 기타 및 상세불명 담도 부위의 악성신생물	C24
9. 기관의 악성신생물	C33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4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7 】

3

여성특정3대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중)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위의 악성신생물	C16
2. 자궁경의 악성신생물	C53
3. 자궁체의 악성신생물	C54
4. 상세불명 자궁 부위의 악성신생물	C55
5. 난소의 악성신생물	C56
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7
7. 태반의 악성신생물	C58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8 】

고액치료비관련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사지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2.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1
3.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4. 뇌의 악성신생물	C71
5.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72
6. 호지킨병	C81
7. 여포성(결절성) 비호지킨 림프종	C82
8. 미만성 비호지킨 림프종	C83
9. 말초 및 피부성 T-세포 림프종	C84
10. 기타 및 상세불명 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11.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12. 림프 백혈병	C91
13. 골수성 백혈병	C92
14. 단핵구성 백혈병	C93
15.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16.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3 가 12 () 1
 , .

4 가
 .
 가 가
 가 18 () 1 .

5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6 가 5 , 1
 () 2 가 1 .

7 가
 (“ ” 3) (“ ” 5) 15
 , 9 ()
 . (“ ”)
) , (“ ”)
 (30) 가 30
 30 가 1 .

8 15
 9 ()
 (“ ”)
 1 가 12 (가
) 1
 1
 80 , 24

2 ()

9

1 가 1 (1
) , 12 (1
) 1
90 ,
2
90 ,

10

1 , 가
18 () 1

11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제9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3 ()

12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

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3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상피내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4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경계성 종양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5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의 관리 하에 수술분류표(별표 8 참조)에 정한 행위(이하 “수술”이라 합니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

16

가

1 “ ”)

17

가 가

18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9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함

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0

19 ()
3
10
1
“(2)

5

21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술자금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 : 500만원 2회 이후 : 100만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100만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100만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100만원

- 주) 1.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중도형 및 갱신형의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도형은 보장변경일로 부터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갱신형은 갱신일을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 별표 2 】

(20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수술자금 (제16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8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암진단특약(별표5)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
피부암제외]와 동일

【 별표 6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암진단특약(별표6)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와 동일

【 별표 7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암진단특약(별표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와
동일

【 별표 8 】

- 「수술분류표」상의 “수술”이란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고 기구를 사용해서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수술분류표」상의 수술을 대신하여 완치율이 높고 일반적으로 의학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침단의 치료기법으로 시술한 경우 「수술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수 술 의 종 류	수술종류 분류(종)
○ 피부 · 유방의 수술(皮膚 · 乳房의 手術) 1. 식피술(植皮術) (25cm ² 미만은 제외함) 2. 유방절단술(乳房切斷術)	2 2
○ 근골의 수술(筋骨의 手術)[발정술(拔釘術)은 제외함] 3. 골이식술(骨移植術) 4. 골수염 · 골결핵수술(骨髓炎·骨結核手術) [농양(膿瘍)의 단순한 절개는 제외함] 5. 두개골 관혈수술(頭蓋骨 觀血手術) [비골 · 비중격(鼻骨 · 鼻中隔)은 제외함] 6. 비골 관혈수술(鼻骨 觀血手術) [비중격만곡증수술(鼻中隔彎曲症手術)은 제외함] 7. 상악골 · 하악골 · 악관절 관혈수술 (上顎骨 · 下顎骨 · 顎關節 觀血手術) [치, 치육(齒, 齒肉)의 처치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8. 척추 · 골반 관혈수술(脊椎 · 骨盤觀血手術) 9. 쇄골 · 견갑골 · 늑골 · 흉골 관혈수술 (鎖骨 · 肩胛骨 · 肋骨 · 胸骨 觀血手術) 10. 사지절단술(四肢切斷術) [손가락·발가락은 제외함] 11. 절단사지재접합술(切斷四肢再接合術)[골 · 관절(骨·關節)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2. 사지골 · 사지관절 관혈수술(四肢骨 · 四肢關節 觀血手術) [손가락 · 발가락은 제외함] 13. 근 · 건 · 인대 관혈수술 (筋 · 腱 · 靱帶 觀血手術) [손가락 · 발가락은 제외함. 근염 · 결절종 · 점액종수술 (筋炎·結節腫·粘液腫手術)은 제외함]	2 2 2 1 2 2 1 2 2 1 1

○ 호흡기 · 흉부의 수술(呼吸器·胸部의 手術)	
14. 만성부비강염근본수술(慢性副鼻腔炎根本手術)	1
15. 후두전적제술(喉頭全摘除術)	2
16. 기관 · 기관지 · 폐 · 흉막수술(氣管 · 氣管支 · 肺 · 胸膜手術)[개흉술(開胸術)을 수반하는 것]	2
17. 흉곽형성술(胸廓形成術)	2
18. 종격중앙적출술(縱隔腫瘍摘出術)	3
○ 순환기 · 비의 수술(循環器 · 脾의 手術)	
19. 관혈적 혈관 형성술(觀血的 血管 形成術) [혈액투석용(血液透析用)의 SHUNT 형성술(形成術)을 제외함]	2
20. 정맥류근본수술(靜脈瘤根本手術)	1
21. 대동맥 · 대정맥 · 폐동맥 · 관동맥수술 (大動脈 · 大靜脈 · 肺動脈 · 冠動脈手術) [개흉 · 개복술(開胸 ·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3
22. 심막절개 · 봉합술(心膜切開 · 縫合術)	2
23. 직시하심장내 수술(直視下心臟內 手術)	3
24. 체내용(體內用) Pace Maker 매입술(埋入術)	2
25. 비적제술(脾摘除術)	2
○ 소화기의 수술(消化器의 手術)	
26. 이하선종양 적출술(耳下腺腫瘍 摘出術)	2
27. 악하선종양 적출술(顎下腺腫瘍 摘出術)	1
28. 식도이단술(食道離斷術)	3
29. 위절제술(胃切除術)	3
30. 기타의 위 · 식도수술(胃 · 食道手術) [개흉 · 개복술(開胸 · 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
31. 복막염수술(腹膜炎手術)	2
32. 간장 · 담낭 · 담도 · 췌장 관혈수술(肝臟 · 膽囊 · 膽道 · 胰臟 觀血手術)	2
33. 탈장 근본수술(脫腸 根本手術)	1
34. 충수절제술 · 맹장봉축술(蟲垂切除術 · 盲腸縫縮術)	1
35. 직장탈 근본수술(直腸脫 根本手術)	2
36. 기타의 장 · 장간막 수술(腸 · 腸間膜 手術) [개복술(開腹術)을 수반하는 것]	2
37. 치루 · 탈항 · 치핵 근본수술(痔瘻 · 脫肛 · 痔核 根本手術) [근치(根治)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처치 · 단순한 치핵(痔核)만의 수술은 제외함]	1

○ 뇨 · 성기의 수술(尿 · 性器의 手術)	
38. 신이식수술(腎移植手術)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3
39. 신장 · 신우 · 뇨관 · 방광 관혈수술(腎臟 · 腎盂 · 尿管 · 膀胱 觀血手術) [경뇨도적 조작(經尿道的 操作)은 제외함]	2
40. 뇨도협착 관혈수술(尿道狹窄 觀血手術)	2
41. 뇨루폐쇄 관혈수술(尿瘻閉鎖 觀血手術) [경뇨도적조작(經尿道的操作)은 제외함]	2
42. 음경절단술(陰莖切斷術)	3
43. 고환 · 부고환 · 정관 · 정색 · 정낭 · 전립선 수술(睪丸 · 副睪丸 · 精管 · 精索 · 精囊 · 前立腺 手術)	2
44. 음낭수종 근본수술(陰囊水腫 根本手術)	1
45. 자궁광범 전적제술(子宮廣汎 全摘除術) [단순자궁전적(單純子宮全摘) 등의 자궁전적제술(子宮全摘除術)은 제외함]	3
46. 자궁경관형성술 · 자궁경관봉축술(子宮經管形成術 · 子宮經管縫縮術)	1
47.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
48. 자궁외 임신수술(子宮外 妊娠手術)	2
49. 자궁탈 · 질탈수술(子宮脫 · 膺脫手術)	2
50. 기타의 자궁수술(子宮手術) [자궁경관 Polyp 절제술 · 인공임신중절술(子宮頸管 Polyp 切除術 · 人工妊 娠中絶術)은 제외함]	2
51. 난관 · 난소 관혈수술(卵管 · 卵巢 觀血手術) [경질적조작(經膺的操作)은 제외함]	2
52. 기타의 난관 · 난소수술(卵管 · 卵巢手術)	1
○ 내분비기의 수술(內分泌器의 手術)	
53. 뇌하수체종양적제술(腦下垂體腫瘍摘除術)	3
54. 갑상선수술(甲狀腺手術)	2
55. 부신전적제술(副腎全摘除術)	2
○ 신경의 수술(神經의 手術)	
56. 두개내 관혈수술(頭蓋內 觀血手術)	3
57. 신경 관혈수술(神經 觀血手術)[형성술 · 이식술 · 절제술 · 감압술 · 개방술 · 염제술(形成術 · 移植術 · 切除術 · 減壓術 · 開放術 · 捻除術)]	2
58. 관혈적 척수종양 적출수술(觀血的 脊髓腫瘍 摘出手術)	3
59. 척수경막내외 관혈수술(脊髓硬膜內外 觀血手術)	2

○ 감각기 · 시기의 수술(感覺器 · 視器의 手術)	
60. 안검하수증 수술(眼瞼下垂症 手術)	1
61. 누소관형성술(淚小管形成術)	1
62. 누낭비강문합술(淚囊鼻腔吻合術)	1
63. 결막낭형성술(結膜囊形成術)	1
64. 각막이식술(角膜移植術)	1
65. 관혈적 전방 · 홍채 · 초자체 · 안와내 이물제거술(觀血的 前方 · 虹彩 · 硝子體 · 眼窩內 異物除去術)	1
66. 홍채전후유착박리술(虹彩前後癒着剝離術)	1
67. 녹내장 관혈수술(綠內障 觀血手術)	2
68. 백내장 · 수정체 관혈수술(白內障 · 水晶體 觀血手術)	2
69. 초자체 관혈수술(硝子體 觀血手術)	1
70. 망막박리증수술(網膜剝離症手術)	1
71. Laser ·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수술(眼球手術)[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
72. 안구적제술 · 조직충진술(眼球摘除術 · 組織充填術)	2
73. 안와종양적출술(眼窩腫瘍摘出術)	2
74. 안근이식술(眼筋移植術)	1
○ 감각기 · 청기의 수술(感覺器 · 聽器의 手術)	
75. 관혈적 고막 · 고실형성술(觀血的 鼓膜 · 鼓室形成術)	2
76. 유양동삭개술(乳樣洞削開術)	1
77. 중이 근본수술(中耳 根本手術)	2
78. 내이 관혈수술(內耳 觀血手術)	2
79. 청신경종양적출술(聽神經腫瘍摘出術)	3
○ 악성신생물의 수술(惡性新生物의 手術)	
80. 악성신생물 근치수술(惡性新生物 根治手術)	3
81. 악성신생물 온열료법(惡性新生物 溫熱療法)[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 1회의 급여를 한도로함]	1
82. 기타의 악성신생물 수술(惡性新生物手術)	2
○ 상기 이외의 수술(上記 以外の 手術)	
83.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2
84.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2
85.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1

86. 충격파(衝擊波)에 의한 체내결석파쇄술(體內結石破碎術)[시술(施術)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2
87. Fiberscope 또는 혈관(血管) Basket Catheter에 의한 뇌·후두·흉부·복부장기 수술(腦·喉頭·胸部·腹部臟器手術) [검사·처치는 포함하지 않음.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에 급여를 한도로 함]	1
○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 88. 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新生物根治 放射線照射)[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로 시술(施術) 개시일부터 60일간에 1회의 급여를 한도로 함]	1

※ 1. 치료를 목적으로 한 수술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수술”이란 치료를 위한 수술을 말하며, 예를 들어 미용성형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충수의 예방적수술 등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 개두술

“개두술”이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3. 개흉술

“개흉술”이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경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늑골, 흉골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4. 개복술

“개복술”이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A1) [. . .] . (. . .)

1

1

가 (請約) 가 (承
諾) 가 (. “ ” ,
“ ”)
1
가 .
가 가
1. 가
2. 가 (가) 1 가
(3) 27 () 2
(4) (“ ”)
가
3. 2 ()
4 가

2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 자녀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3. 자녀형의 경우 특약체결시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선택한 자녀(직계비속 포함)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 ⑤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자녀인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의 해지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의 효력은 계속됩니다.

3

가 12 () 1

,

4

가

가

가
가

18 (

) 1

5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6

) 2 가 5 , 1 (

,

7

(“ ” 3) (“ ” 5) 15
9 ()

() , (“ ”)
(30) 가 30
가 1

8

15

9 ()
(“ ”)
가

1

1

80 , 24

2 ()

9

1 가 1 (1
) , 12 () 1
90 ,
2
90 .

10

1 , 가
18 () 1 .

11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제9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3 ()

12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상피내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상피내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 종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기타피부암, 상피내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4

(1 “ ”)

(“ ”)

Figure 1 illust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nodes (n) and the number of edges (m) in a graph. The diagram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both labeled '가' (A).

Section A (Left) shows a graph with 16 nodes and 120 edges, labeled '16 ()' and '120'. Section B (Right) shows a graph with 16 nodes and 120 edges, labeled '16 ()' and '120'.

The diagram also includes a small table with 2 rows and 2 columns, labeled '가' and '가'.

가	가
가	가

2 - 11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9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0

19 ()
 , 3 .
 10
 1
 “ (2) .

5

21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입원급여금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5만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2만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상피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2만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2만원

- 주) 1.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중도형 및 갱신형의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도형은 보장변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갱신형은 갱신일을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3.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20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입원급여금 (제16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8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암진단특약(별표5)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
피부암제외]와 동일

【 별표 6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암진단특약(별표6) 상피내의 신생물분류표와 동일

【 별표 7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암진단특약(별표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분류표와
동일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3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3 (A1)

1

1

諾) 가 (請約) 가 (承

“ ”, “ ”)

1

가

가

가

1. 가

2. 가 (가) 1 가

(3) 27 () 2

(4) (“ ”)

가

3. 2 ()

4 가

2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3

가

가

가

가 16 () 1 .

4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1 () 2 가 1 .

6

가 (“ ” 3) (“ ” 5) 15 , 8 () (“ ”) 30 (30) 가 1 .

7

15 8 (“ ”) 1 가 1 80 .

2 ()

8

1 가 1 (1) , 11 (

90) 1 ,
 90 2
 90
 9
 1 가
 16 () 1

-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제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3 ()

- 11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제외](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및 전암병소(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미세침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그 증거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12 “ ()”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 및 뇌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단, 일과성 대뇌허혈성 발작(TIA) 및 관련증후군,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 ②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단일광자 방

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3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 조항에서 규정한 의사가 부검소견서 또는 사망이전의 병력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한 경우 이를 확정진단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의 병력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4

가 , 1
()
가 (“ ”) (1
“ ”) .

15

가 가 .

16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7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8

17 (3)
 , 10
 1
 “ (2)

5

19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암 및 기타 피부암, 뇌출혈 및 뇌경색(증)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주) 1.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그날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바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 중도형 및 갱신형의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도형은 보장변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을 갱신형은 갱신일을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로 합니다.

【 별표 2 】

(18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14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6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암진단특약(별표5)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분류표[기타
피부암제외]와 동일

【 별표 6 】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4. 뇌경색증	I63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7 】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 심근경색증	I21
2.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3.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A1)

1

諾)

가

가

2.

;

1

3.

4.

가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①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가

가 가 14 () 1 .

4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 1 () 2 가 1 .

6

가 (“ ” 3) (“ ” 5) 15 , 8 () (“ ”) 30 가 1 (30 가 1 .

7

15 8 (“ ”) 1 가 1 80 .

2 ()

8

1 가 , 1 (1

)

9

1 가
14 () 1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단, 일과성 대뇌 허혈성 발작(TIA) 및 관련증후군, 외상성 머리내 출혈, 혈관성 치매는 제외됩니다.
- ② 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 단층촬영(brain CT scan), 핵자기공명영상법(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 방출 단층술(PET),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12

가
(1 “ ”) (1).

13

가 , 가
가 , 1
가 , 1
가 1
12 () ,

14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5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6

15 ()
3
10
1
“(2)
가 1
,

5

17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 명칭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진단 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 초로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1회한)	신규형	경과 기간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중도형 · 갱신형			1,000만원

주)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별표 2 】

(16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진단자금 (제12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4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뇌출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밑 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1

가

가

가

1.

2. 가 (가)

(3) 1 가 . ,

27 () 2
(4) (“ ”)

가

3. 12 () 가

4. 2 ()

4

가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3

가

가 가 14 () 1 .

4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 1 () 2 가 1 . , .

6

가 (“ ” 3) (“ ” 5) 15 , 8 () . (“ ”) (“ ”) 30 가 1 (30 가 1 .

7

15 8 (“ ”) 1 가 1 1 80 .

2 ()

8

1 가 , 1 (1) .

9

1 가
14 () 1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동 조항에서 규정한 의사가 부검소견서 또는 사망이전의 병력을 근거로 피보험자의 사인을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판단한 경우 이를 확정진단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의 병력은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12

가
(1 “ ”) (1).

13

가 , 가
가 , 1
1 가 1
12 ()

14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5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 등)
 - 3. 보험증권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6

15 ()
3
10
1
“(2)

5

17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급성심근경색증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1회한)	신규형	경과 기간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중도형 · 갱신형			1,000만원

주)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별표 2 】

(16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진단자금 (제12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4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3대질병사망특약(별표7) 급성심근경색증분류표와 동일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begin{matrix} 1 & 0 & 0 \\ 0 & 1 & 0 \\ 0 & 0 & 1 \end{matrix}] \cdot (\begin{matrix} 1 & 0 & 0 \\ 0 & 1 & 0 \\ 0 & 0 & 1 \end{matrix})$$

1

1

.

가

가

)

Q

•

가

)

가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가

가 가 14 () 1 .

4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 1 () 2 가 1 . , .

6

(“ ” 3 .) (“ ” 5) 15 , 8 () . (“ ”) . (“ ”) 30 가 1 30 가 1 .

7

15 8 (“ ”) 1 가 1 1 80 .

2 ()

8

1 가 , 1 (1

2)

9

1 가
14 () 1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이 특약에 있어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골수부전상태 또는 악성종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혈액을 만드는 조혈모세포(hematopoietic stem cell)의 이식수술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조혈모이식수술, 자가골수조혈모세포이식수술, 자가말초조혈모세포이식수술, 제대혈모세포이식수술을 말합니다. 단, 조혈모세포수혜자에게 조혈모세포를 제공할 목적으로 조혈모세포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수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이식수술”이라 함은 암 또는 골수부전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타인의 골수로부터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제공받아 수혜자의 골수를 정상적인 골수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2. “자가(aut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강력한 항암요법에 의한 골수독성을 경감하기 위해서 암환자 자신의 골수내의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 다음 고량화학요법(high-dose myeloablative therapy)을 시행하고 그 후에 이 조혈모세포를 암환자 자신에게 다시 투여해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3. “자가(aut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강력한 항암요법에 의한 골수독성을 경감하기 위해서 암환자 자신의 말초혈액내의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필요한 처리를 한 다음 고량화학요법(high-dose myeloablative therapy)을 시행하고 그 후에 이 조혈모세포를 암환자 자신에게 다시 투여해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4. “제대혈모세포이식수술”이라 함은 타인의 제대혈(배꼽의 탯줄의 혈액)속에 있는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대량 항암요법으로 암환자의 골수를 완전히 억제시킨 다음 제대혈모세포를 투여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12

가
(“ ”) (1 “ ”)

) (1).

13

가 가

14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5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 등)
 - 3. 보험증권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6

15 ()
3
10
1
“(2)

5

17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한)	500만원

【 별표 2 】

(16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수술자금 (제12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4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가 15 () 1 , .

4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 2 가 5 1 , 1 . , .

6

(“ ” 3) (“ ” 5) 15 , 9 () (“ ”) (“ ”) , (“ ”) 30 가 1 30 가 1 .

7

15 8 (“ ”) 1 가 1 1 80 .

2 ()

8

1 가 1 (1) , 1

2

9

1 15 () 1 가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분류표(별표 5 참조)에 정하는 질병 (이하 “질병”이라 합니다)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4 (1 “ ”) (“ ”)

13

가 가
12 () 1 120
12 () 가
2 1 2
180
12 () 가
12 () 가

14

- 가 가
1. 가
, 가 ()
1 2 가
 2. 가
, 가
 3. 가
 4. (,)
 - 5.
 6. ,
 - 7.
 8. ,
 9. (-), ,
1 1 3 가 ,
 1. 1 1
 2. 1 2
 3. 1 3
1 4 10 ,

15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6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7

16 ()
3
10
1
“(2)

5

18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질병이 발생하여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지급

주)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17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입원급여금 (제12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5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I.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B99
II. 신생물	C00~D48
III.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한 특정장애	D50~D89
IV.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E90
VI. 신경계의 질환	G00~G99
VII.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H59
VIII. 귀 및 유양돌기의 질환	H60~H95
IX. 순환기계의 질환	I00~I99
X. 호흡기계의 질환	J00~J99
X I. 소화기계의 질환	K00~K93
X II.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L00~L99
X III.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X IV. 비뇨생식기계의 질환	N00~N99
X V. 임신, 출산 및 산욕	O00~O99
X VI. 주산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P96
XVIII.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R00~R99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정신장애(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아의 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A1)

1

諾)

가

가

2.

,

3.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가

가

가

가 16 () 1 .

4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6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1 () 2 가 1 . ,

6

가 (“ ” 3) (“ ” 5) 15 , 8 () (“ ”) . (“ ”) .) 가 30 가 1 30 가 1 .

7

15 8 (“ ”) 1 가 1 1 80 .

2 ()

8

1 가 1 (1)

2

9

1

16 () 1

가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특정질환”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성인 특정질환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제1형, 제2형, 제3형의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성인특정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12

이 특약에 있어서 “성인특정질환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성인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 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

13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성인특정질환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가

(“ ”)

가

(1 “ ”)

1. 가 (1) :
2. 가 4 :

15

가 , 가

가

14 () 2 1 30

120 , 3

14 () 2 가

2 1

2

180

14 () 2 가

14 () 1 2 가

16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7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 입원증명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8

17 (3) , 10 .
1 “ (2) ” .

6

19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성인 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성인특정질환수술을 받았을 경우	제1형	1회당 300만원
		제2형	1회당 100만원
		제3형	1회당 50만원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성인 특정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성인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제1형	3일 초과 1일당 5만원
		제2형	3일 초과 1일당 3만원
		제3형	3일 초과 1일당 1만원

- 주) 1. 성인특정질환 : 제4차 개정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1.1시행) 중 성인특정질환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2. 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단, 성인특정질환 제3형에 의한 입원급여금의 경우는 3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18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수술자금, 입원급여금 (제14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6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성인특정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제1형]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심장 침습이 있는 류마티스 열	I01
류마티스 승모판 질환	I05
류마티스 대동맥판 질환	I06
류마티스 삼첨판 질환	I07
다발성 판막 질환	I08
기타 류마티스 심장 질환	I09
협심증	I20
급성 심근경색증	I21
속발성 심근경색증	I22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한 특정 현재 합병증	I23
기타 급성 허혈성 심장 질환	I24
만성 허혈성 심장병	I25
폐 색전증	I26
기타 폐성 심장 질환	I27
기타 폐혈관의 질환	I28
급성 심장막염	I30
기타 심장막의 질환	I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3
비류마티스 승모판 장애	I34
비류마티스 대동맥판 장애	I35
비류마티스 삼첨판 장애	I36
폐동맥판 장애	I37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 판막 장애	I39
급성 심근염	I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
신장근육병증	I42
발작성 빠른맥	I47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	I48
심장기능상실(심부전)	I50
거미막밑 출혈	I60
뇌내출혈	I61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뇌경색증	I63

[제2형]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급성 A형간염	B15
급성 B형간염	B16
기타 급성 바이러스간염	B17
만성 바이러스간염	B18
상세불명의 바이러스간염	B19
독성 간질환	K71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기능상실	K72
간의 섬유증 및 경화	K74
급성 콩팥(신장)기능상실	N17
만성 콩팥(신장)기능상실	N18
상세불명의 콩팥(신장)기능상실	N19

[제3형]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남 녀 공 통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미만성(풍토성) 갑상샘종	E01.0
	요오드결핍과 관련된 다결절성(풍토성) 갑상샘종	E01.1
	기타 갑상샘 기능저하증	E03
	기타 비중독성 갑상샘종	E04
	갑상샘중독증(갑상샘 기능항진증)	E05
	갑상샘염	E06
	인슐린-의존 당뇨병	E10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E11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E1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콩팥(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콩팥(신장)병 이차 고혈압	I13 I15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 및 점액농성 만성 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2
	천식	J45
	천식지속 상태	J46
	위궤양	K25
	십이지장 궤양	K26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남 녀 공 통	화농성 관절염	M0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관절의 직접 감염	M01
	반응성 관절병증	M0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감염후 및 반응성 관절병증	M03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	M05
	기타 류마티스 관절염	M06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
	청소년성 관절염	M0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청소년성 관절염	M09
	통풍	M10
	기타 결정성 관절병증	M11
	기타 특정 관절병증	M1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M14
	다발성 관절증	M15
	엉덩관절증	M16
	무릎관절증	M17
	제1손목손허리 관절의 관절증	M18
	손가락 및 발가락의 후천성 변형	M20
	사지의 기타 후천성 변형	M21
	무릎뼈의 장애	M22
	기타 명시된 관절 이상	M24
	전신 홍반성 루푸스	M32
	전신 경화증	M34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2
	뼈 연속성의 장애	M84
	노년 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백내장 및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8
	급성 충수염	K35
	기타 충수염	K36
	상세불명의 충수염	K37
	충수의 기타 질환	K38
	담석증	K80
	담낭염	K81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남 자	급성 신염 증후군	N00
	급속 진행성 신염 증후군	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2
	만성 신염 증후군	N03
	신 증후군	N04
	상세불명의 신염 증후군	N05
	명시된 형태학적 병터를 동반한 고립성 단백뇨	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 장애	N08
	급성 세뇨관-사이질성 신염	N10
	만성 세뇨관-사이질성 신염	N11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세뇨관-사이질성 신염	N12
	폐쇄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3
	약물 및 중금속 유발성 세뇨관-사이질성 및 세뇨관 병태	N14
	기타 세뇨관-사이질성 질환	N1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세뇨관-사이질성 장애	N16
	콩팥(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0
	하부 요로의 결석	N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22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산통	N23
	세뇨관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	N25
	상세불명의 콩팥(신장) 위축	N26
	원인미상의 작은 신장	N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콩팥(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콩팥(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 장애	N31
	요도 협착	N35
	전립샘의 증식	N40
여 자	양성 유방 형성이상	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유방의 비대	N62
	유방의 상세불명의 소괴	N63
	유방의 기타 장애	N64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 류 번 호
여 자	자궁관염 및 난소염	N70
	자궁목을 제외한 자궁의 염증성 질환	N71
	자궁목의 염증성 질환	N72
	기타 여성 골반의 염증성 질환	N7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여성 골반 염증성 장애	N74
	자궁내막증	N80
	여성 생식기 탈출	N81
	여성생식기를 포함한 셋길(누공)	N82
	자궁목의 형성이상	N87
	유방의 양성신생물	D24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신생물	D26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신생물	D28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D39
	미상의 신생물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6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암수술특약(별표8) 수술분류표와 동일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가 가
) 1 , 15 (

4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 1
 () 2 가 1
 . , .

6

가
 (“ ” 3 .) (“ ” 5) 15
 , 8 ()
 . (“ ”)
 .)
 , (“ ”)
 (30) 가 30
 30 가 1
 .

7

15
 8 ()
 (“ ”)
 가 11 (.
) 1 가
 1 .
 1
 80
 .
 2 ()

8

.
 1 가 , 1 (1
))

2

9

1

15 () 1

가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이 특약에 있어서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별표 5(중대한 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12

(PTCA)

이 특약에 있어서 “관상동맥성형술(PTCA)”이라 함은 관상동맥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관상동맥우회술(CABG) 대신 혈관카테터를 이용한 관상동맥확장술을 말합니다.

[예] 경피적 관동맥 풍선확장술(percutaneous transluminal balloon angioplasty),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등

13

가 (1)
가 (PTCA) (1) (“
” 가) (1 “ ”) .

14

가 , 가
가
(PTCA) 7 ()

15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6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 진단서(병명기입), 입원치료확인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7

16 ()
, 3 . ,
10 .
1
“ (2) .

5

18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 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수술 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중대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신규형	경과 기간	1년미만	500만원
				1년이후	1,000만원
		중도형 · 갱신형		1,0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최초로 관상동맥성형술(PTCA)을 받았 을 경우(1회한)	신규형	경과 기간	1년미만	50만원
				1년이후	100만원
		중도형 · 갱신형		100만원	

- 주) 1.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2. 중대한 수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우회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 “심장판막수술”, “5대장기이식수술”을 말합니다.
 3. 관상동맥성형술(PTCA)로 인한 수술자금의 지급회수는 제7조(특약의 자동갱신)에 의하여 갱신되어지는 경우에 새로 계산 됩니다.

【 별표 2 】

(17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수술자금 (제13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5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 ”

I. 관상동맥우회술(Coronary Artery Bypass Graft, CABG)

- ① “관상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질환(Coronary Artery Disease)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 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遠位部)의 관상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그러나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예) 관상동맥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죽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II.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Aorta Graft Surgery)

- ① “대동맥류인조혈관치환수술”이라 함은 대동맥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개흉술 또는 개복술을 한 후 반드시 대동맥류 병소를 절제(excision)하고 인조혈관(graft)으로 치환하는 두가지 수술을 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대동맥”이라 함은 흉부 또는 복부 대동맥을 말하는 것으로 대동맥의 분지(branch)동맥들은 제외됩니다.
- ② 단, 하기와 같이 카테터를 이용한 수술들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예) 경피적혈관내대동맥류수술(percutaneous endovascular aneurysm repair)

III. 심장판막수술(Heart Valve Surgery)

- ① “심장판막수술”이라 함은 심장판막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다음의 두가지 기준 중 한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가.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인공심장판막 또는 생체판막으로 치환하여 주는 수술
- 나. 반드시 개흉술 및 개심술을 한 후 병변이 있는 판막에 대해 판막성형술(valvuloplasty)을 해주는 수술
- ② 그러나 하기와 같은 수술들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가. 카테터를 이용하여 수술하는 경우
- 예) 경피적 판막성형술(percutaneous balloon valvuloplasty)
- 나. 개흉술 또는 개심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

IV. 5대장기이식수술(5 Major Organ Transplantation)

- ① “5대장기이식수술”이라 함은 5대장기의 만성부전상태로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장기이식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에서 인정한 의료기관에서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에 대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으로 타인의 내부 장기를 적출하여 장기부전상태에 있는 수혜자에게 이식을 시행한 경우에 대한 수술을 말합니다.
- ② 단, 랑게르한스 소도 세포 이식수술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A1) [.] (. .)

1

1

諾) 가 (請約) 가 (承
가
“ ”,
1
가
가
1.
2. 2 ()
4 가

2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3

가
가
가
13 () 1

4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3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1 () 2 가 1 . , .

6

가 (“ ” 3) (“ ” 5) 15 , 8 () . (“ ”) . (“ ”) 30 가 1 .

7

15 8 (“ ”) 1 (가) 1 80 .

2 ()

8

1 가 1 (1) 2 , .

9

1 , 가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가 1
가 (“ ”) (1
“ ”) .

12

가 가
가
11 () 가
, , 27 ()
) 2 (“ ”
) 가
11 () 180
180
3 .
() 2) 가 (

13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4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5

14 ()
 , 3 . ,
 10 .
 1
 “ (2) .

5

16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금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 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지급

【 별표 2 】

(15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11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3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3

가

가

가
가

14(

) 1

4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 1 (

) 2

가

1

6

가

(“ ” 3)

5

(“ ”) 15

8 ()

(“ ”

.)

,

(“ ”)

(30) 가 30

30
가 1

7

15

8 ()

(“ ”)

가

1

1

80 , 24

2

()

8

1 가 1 (1
2) ,

9

1 가
14 () 1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 정한 행위(이하 “수술”이라 합니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

12

가
(1 “ ”) (“ ”)

13

가 , 가
가 가 가

14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5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수술증명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6

15 ()
, 3 ,
10
1
“ (2) .

5

17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급금액
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종 : 20만원 2종 : 50만원 3종 : 100만원 지급

주)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별표 2 】

(16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수술자금 (제12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4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02-1호, 2003. 1. 1 시행)에 의함.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I.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00~B99
II. 신생물	C00~D48
III.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기전을 침범하는 특정 장애	D50~D89
IV.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E00~E90
VI. 신경계통의 질환	G00~G99
VII.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H00~H59
VIII. 귀 및 꼭지돌기의 질환	H60~H95
IX. 순환기계통의 질환	I00~I99
X. 호흡기계통의 질환	J00~J99
X I. 소화기계통의 질환	K00~K93
X II.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질환	L00~L99
X III.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M00~M99
X IV. 비뇨생식기계통의 질환	N00~N99
X V. 임신, 출산 및 산후기	O00~O99
X VI.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P00~P96
X VIII. 달리 분류되지 않은 증상, 징후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 소견	R00~ R99
X IX.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S00~T98
X X.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V01~Y98
○전염병 예방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전염병	
○치료상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품, 의약품 및 생물 제제에 의한 사고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재해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주) 다음 사항은 입원급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정신장애(심신상실, 정신박약을 포함합니다)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2. 선천적인 장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콜중독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4. 치아보철과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5. 치료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건강진단(인간 도-크 검사를 포함합니다), 미용상의 처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아니하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 별표 6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암수술특약(별표8) 수술분류표와 동일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3

가
 가
 가
 15 () 1

4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 1 () 2 가 1

6

가
 (“ ” 3) (“ ” 5) 15
 8 ()
 (“ ”)
 (30) 가 30
 가 1

7

15
 8 (“ ”)
 1 가
 1
 80 , 24

2 ()

8

1 가 1 (1
2) ,

9

1 15 () 1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및 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 정하는 질병 또는 재해(이하 “질병 또는 재해”라 합니다)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4 가
(1 “ ”)

13

가 , 가
1 120 2

1 2 . ,

180

가

가

2

.

14

- 가 가
1. 가 (, 가) 2 가
 2. 가 1 가
 3. 가
 4. (,)
 - 5.
 6. ,
 - 7.
 8. ,
 9. (-), ,
 - 1 1 3 가 ,
 1. 1 1
 2. 1 2
 3. 1 3
 - 1 4 10 ,

15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6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7

16 ()
3
10
1
“(2)

5

18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주)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17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입원급여금 (제12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5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질병재해수술특약(별표5) 질병 및 재해분류표와 동일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A1) [])

1

1
諾) 가 (請約) 가 (承
“ ”, “ ”)
1
가
가
1. 가
2. 가 (가 1 가)
(3) 27 () 2
(4) (“ ”)
가
3. 2 ()
4 가

2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3

가
가 가

가 14 () 1 .

4

-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1 () 2 가 1 .

6

가 (“ ”) 5 (“ ”) 15
 , (“ ”) 8 ()
 . (“ ”)
 .) 가 30 (“ ”)
 (30 가 1 .

7

15 8 (“ ”)
 1 (가)
 . 1
 80 . ,

2 ()

8

1 가 1 (1)

2
.

9

.

1
14 () 1
가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이 특약에 있어서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12

(4) 가
1 가 (“ ”)
(1 “ ”)

13

가 가
12 () 180
180
2 () 가 ()
() 2) 가

14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5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6

15 ()
3
10
1
“(2)

5

17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2,0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그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 별표 2 】

(16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제12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4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 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 다음에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운행중의 교통기관(이에 적재되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의 충돌, 접촉, 화재, 폭발, 도주 등으로 인하여 그 운행중의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지 아니한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나. 운행중인 교통기관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또는 승객으로서 개찰구를 갖는 교통기관의 승강장 구내(개찰구의 안쪽을 말합니다)에 있는 동안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 다. 도로통행 중 건조물, 공작물 등의 도괴 또는 건조물, 공작물 등으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
2. 제1호에서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 다음에 정한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차, 전동차, 기동차, 모노레일, 케이블카(공중 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등
 - 나. 승용차, 버스,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스쿠터, 자전거, 화차, 경운기 및 우마차 등
 - 다.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등
3. 제2호의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일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재해로 봅니다.
4.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사고일지라도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재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5. 이 표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자동차 전용도로 및 통로를 포함합니다)로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포함합니다.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A1)[
(
)

1

1

諾) 가 (請約) 가 (承
가 .(“ ”,
“ ”)

1

가

가

가

1.

가

2.

가

(

가

)

(

5

)

(

3

)

1

가

.

,

,

27

(

)

2

(

4

)

(

“

”

)

가

3.

12

(

)

가

4.

2

(

)

4

가

2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3

가

9

1
14 () 1 가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이 특약에 있어서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12

(4) 가
1 6 가
“ ” (“ ”) (1

13

가
1 가
가
가
12 () 180
180
2 () 가
2) 가
12 (()) 가
가
4 가 2

가 가

4 가 가

5 가

가 (後段)

1. 가

2. 1 가

4 6 1 가

14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5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6

15 ()

3

10

1

“(2)

5

17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장해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각각의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급 제1급 : 2,000만원 제2급 : 1,400만원 제3급 : 1,000만원 제4급 : 600만원 제5급 : 300만원 제6급 : 2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각각의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급 제1급 : 1,000만원 제2급 : 700만원 제3급 : 500만원 제4급 : 300만원 제5급 : 150만원 제6급 : 100만원

주)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 한도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 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으로 합니다.

【 별표 2 】

(16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재해장해급여금 (제12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4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 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 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재해사망특약(별표5) 교통재해분류표와 동일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mathbf{I} - \mathbf{A}(\mathbf{I} - \mathbf{B})^{-1}\mathbf{C}]^{-1} \cdot (\mathbf{I} - \mathbf{A}(\mathbf{I} - \mathbf{B})^{-1}\mathbf{D}) \cdot \mathbf{B}^{-1} \cdot \mathbf{C} \cdot \mathbf{U} \quad (\text{A1})$$

1

1

諾) 가 (請約) 가 (承

“ ”, “ ”) .(“ ”,

1 가 .

가 .

1. 가

2. (3) 1 가

27 () 2

(4) (“ ”)

가 .

3. 2 () .

4 가

2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3

가
.
.
가 가
가

15 (

) 1 .

4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 1 () 2 가 1 . , .

6

가 (“ ”) 5 (“ ”) 15 , . 8 () . (“ ”) .) , (“ ”) . (30) 가 30 가 1 .

7

15 8 (“ ”) . 1 (가 1 . 80 .

2 ()

8

1 가 1 (1) 2 , .

9

15 () 1 가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제8조(보험료의 납입 및 회사의 책임개시일) 제2항을 준용합니다.

3 ()

11

이 특약에 있어서 “신휴일”이라 함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로 하며, 그 외의 날은 평일이라 하고, 사고 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 보험사고의 발생지가 국외인 경우, 사고발생지의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및 사고발생지의 법률에 의해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된 날을 신휴일로 합니다.

12

이 특약에 있어서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13

가 가
(“ ”) (1 “ ”)
1. 가
가 가
1 가 :
2. 가 2 6 가 :
가

14

가 가

13 () 1 가 27
 () 2 가
 13 () 180
 180
 3 () 가
 2)
 13 (()) 2 가
 가
 가 2 가
 가
 5 가 가
 6 가
 가
 6 가
 가
 1. 가
 2. 1 가
 5 7

15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6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7

16 ()
 , 3 . ,
 10
 .
 1
 “ (2) .

5

18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신희일에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1,000만원
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신희일에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애등급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6급의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각각의 장애등급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급 제2급 : 700만원 제3급 : 500만원 제4급 : 300만원 제5급 : 150만원 제6급 : 100만원

주)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 한도는 신희일에 발생한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하는 사망보험금의 지급액으로 합니다.

【 별표 2 】

(17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사망보험금, 재해장해급여금 (제13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5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재해사망특약(별표5) 교통재해분류표와 동일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1 .

4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 1 () 2 가 1 . , .

6

가 (“ ”) 5 (“ ”) 15 , . 8 () . (“ ”) (“ ”) 30 가 1 . (30 가 1 .

7

15 8 (“ ”) 1 (“ ”) 14 (1) 1 . 1 . 80 .

2 ()

8

1 가 1 (1 1) 2 , .

9

15 () 1 가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이 특약에 있어서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12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 가 (“ ”) 가 (1 “ ”)
1. 가 (3) 1 2 가
2. 가
- 31 :

14

가 , 가 (3) 1 가

13 () 1 180
 2 () 2 가
 13 () 1 가
 , 가
 4 가 2 가
 가
 4 가 가
 5 가
 가
 5 가 (後段)
 1. 가
 2. 1 가
 4 6 1 가
 13 () 2 1
 90 13 () 2 가
 2 1
 7
 180
 가 13 () 2 8
 13 () 2 가

15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6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7

16 ()
, 3 ,
10 .
1
“(2) .

18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의한 소득보장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5

19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소득보장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100만원씩을 아래의 회수만큼 확정 지급 제1급 : 60회 제2급 : 36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사유발생일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사유발생 해당일에 50만원씩을 아래의 회수만큼 확정 지급 제1급 : 60회 제2급 : 36회
간병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피보험자가 그 재해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1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0일 초과 1일당 2만원

- 주) 1. 소득보장급여금의 지급액 한도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소득보장급여금의 지급액으로 합니다.
2. 간병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17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소득보장급여금, 간병급여금 (제13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 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5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 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 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
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재해사망특약(별표5) 교통재해분류표와 동일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A1)

[.] · (.)

1

1

諾) 가 (請約) 가 (承

가 (

“ ”,

“ ”)

1

가

가

가

1. 가

2. 가 (가)

(3) 1 가

27 () 2

(4) (“ ”)

가

3. 2 ()

4 가

2

-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본인형, 배우자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합니다.
1. 본인형의 경우 주계약이 단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배우자형의 경우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특약 체결시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주계약 피보험자의 사망에 의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계약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④ 배우자형의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의 효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격상실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격을 상실한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회사에 신청서(회사양식)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이 특약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3

가

가

가

가

15 (

) 1

4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5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 1 () 2 가 1 . , .

6

가 (“ ”) 5 (“ ”) 15 , . 8 () . (“ ”) (“ ”) 30 가 1 . 30 가 1 .

7

15 8 (“ ”) 1 가 1 . 1 80 .

2 ()

8

1 가 1 (1) 2 , .

9

1 가
15 () 1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재해골절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골절을 말합니다.
- ② 재해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12

이 특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의 관리하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행위(이하 “수술”이라 합니다)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은 제외합니다

13

- 가 가
(“ ”) (1 “ ”)
- 1. 가
(1) :
 - 2. 가
(1) :

14

가 . 가
가 가 1 , 2가 ()
가 1 , .

15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6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골절진단서, 수술증명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7

16 ()
, 3 ,
10 .
1
“ (2) .

5

18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골절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1회당)	20만원
재해수술자금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하였을 경우(1회당)	50만원

주)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별표 2 】

(17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골절진단자금, 재해수술자금 (제13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5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骨折)

재해골절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
2. 목의 골절	S12
3.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4.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5.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
6. 아래팔의 골절	S52
7. 손목 및 손부위에서의 골절	S62
8.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9.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0.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1. 다발성 신체부위의 골절	T02
12.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T08
13. 상세불명 부위의 팔 골절	T10
14. 상세불명 부위의 다리 골절	T12
15.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의 약관에 해당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별표 6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암수술특약(별표8) 수술분류표와 동일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A1)

1

2

- 2 - 1

3

가

가 가 가

14 () 1

4

-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4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 2 가 5 1

6

(“ ”) 가 5
, (“ ”)
) 15 8 ()
, (“ ”)
) () 30 가
30
가 1

7

15
8 ()
(“ ”)
1 가
1
80

2 ()

8

1 가 1 (1 2) , .

9

1 14 () , 1 가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3 ()

11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2

4 가 (“ ”) (1 “ ”) .

13

가 , 가 12 () 1

120
 12 () 가
 2 1 2

180
 12 () 가

12 () 가

14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5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16

15 (3) 10
1 “ ” (2) .

5

17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 부 명 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1만원 지급

주) 재해입원급여금의 경우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16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재해입원급여금 (제12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4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 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
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보험개발원 생보 제 2004-0237 호(2004.07.12)>

(A1)

이 특약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하여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A1) . (. .)

1

1
諾) “ ”, 가 (請約) 가 (承
가 .(“ ”,
1)
가
가
1. 가 (가
2. 가 (가
27 (() 2
(4) (“ ”
)
가
3 가

2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특약체결시 주계약 피보험자(주계약이 연생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선택한 자녀(직계비속 포함)로 합니다.

3

가
가
가
가
18 () 1

4

①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1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그 뜻을 기재하여 드립니다.

5

가 5 1 () 2 가 1

6

가
(“ ”) (“ ” 5) 15
,
8 ()
(“ ” (“ ”)
() , (“ ”)
30 가 30
30 가 1

7

15
8 ()
(“ ” 17 ()
1 1 가
1 1
24

2 ()

8

1 가 , 1 (1
)
2 ,

9

1 , 가
18 () 1

10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復活)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주계약의 부활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약관의 부활의 규정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을 취급합니다.
- ② 주계약의 부활 청약시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이 특약을 부활하는 경우의 책임개시일은 주계약의 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11

이 특약에 있어서 “교통재해”라 함은 교통재해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12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재해골절”이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뼈의 구조상의 연속성이 완전하게 또는 불완전하게 끊어진 상태로서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재해골절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재해골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13

①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상병”이라 함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상병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특정상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14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5

이 특약에 있어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상병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지 아니하고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 가
- 가 (“ ”) (1 “
- ”) .
1. 가
- 가 (3) 1 6 가
- :
2. (1):
3. 가
- (1):

4. : 4

17

가 , 가 (3) 1
가 가
16 () 1 180
2 () 2 가 ()
16 () 1 가
가
가 2 가
가
4 가 가
5 가
가
1. 5 가 (後段)
2. 1 가
4 6
1 가
가 1 가 2가 ()
16 () 4 1 120
16 () 4 가
2 1
9
180
16 () 3 4 가
16 () 4 가

18

- ① 이 약관에 의해 특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19

- ① 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장해진단서, 골절진단서, 통원치료확인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보험증권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20

19 ()

, 3 . ,

10 .

1

“ (2) .

5

21

-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② 주계약에 단체취급특약이 부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특약에 대하여도 단체취급특약 약관을 준용합니다.

【 별표 1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

급부명칭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재해장해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급 제1급 : 2,000만원 제2급 : 1,400만원 제3급 : 1,000만원 제4급 : 600만원 제5급 : 300만원 제6급 : 200만원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지급 제1급 : 1,000만원 제2급 : 700만원 제3급 : 500만원 제4급 : 300만원 제5급 : 150만원 제6급 : 100만원
골절진단 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재해골절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1회당)	20만원
통원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상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통원치료하였을 경우(1회당)	1만원
입원 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입원하였을 경우	3일 초과 1일당 1만원

- 주) 1.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 한도는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는 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으로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별표 2 】

(20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재해장해급여금, 골절진단자금, 통원자금, 입원급여금 (제16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제18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 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예정이율의 50% 1년 초과 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 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예정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 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예정이율은 이 특약의 예정이율을 말합니다.

【 별표 3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3) 장해등급분류표와 동일

【 별표 4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주계약(별표4) 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5 】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재해사망특약(별표5) 교통재해분류표와 동일

【 별표 6 】

(骨折)

무배당 Magic Account보험 응급치료특약(별표5) 재해골절분류표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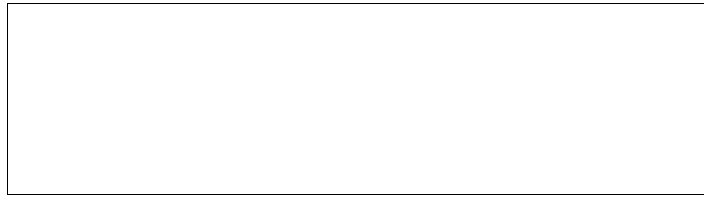
【 별표 7 】

특정상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4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고시 제 2002-1호, 2003. 1. 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중	
· 콜레라	A00
·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A01
· 기타 살모넬라 감염	A02
· 이질	A03
· 기타 세균성 식중독	A05
· 페스트	A20
· 디프테리아	A36
· 발진티푸스	A75
· 황열	A95
· 마마	B03
○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V01~Y98

※ 제5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보험개발원 생장 제 2002-0605 호(2002.12.3)>



본 특약은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의 별도 신청에 의해 부가하여 보장 대신 주계약과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해약환급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특약으로서 부가(연금전환 신청)시점에서 본 특약의 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

1

가 (請約) 가
(承諾) . (“ ” “ ” , “ ” “ ” ,
“ ” “ ”)
가
.
,
(“ ”)
(“ ”)
.
5 ()
가,
가
(解止)
가

2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개인연금형 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부부연금형 계약의 경우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 개인연금형 계약의 경우는 종전보험의 수익자를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부부연금형 계약의 경우는 종전보험의 수익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부부연금형 계약의 경우 종피보험자가 제1항 제 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③ 부부연금형 계약의 경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날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이 특약의 연금지급 개시후에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합니다.

3

계약자는 상속연금형 및 확정연금형에 한하여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제8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

4

3 ()

5 가 (1)

6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7
- ① 이 보험에서 책임준비금 및 생존연금 계산시 적용되는 부리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연단위 복리 3.0% 최저보증, 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 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8
- ① 제3조(계약자의 임의해지)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7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서 정한 이율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4

9 수익자는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피보험자의 호적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 3. 보험증권
- 4. 신분증(주민등록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10 9 ()

3

10

1
“ ”(2) .

5

11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보험 약관을 준용합니다.

【별표 1】

1. 종신연금형

가. 연금유형

- ①정액형
- ②체증형(5%, 10% 체증)
- ③체감형(5%, 10% 체감)

나. 연금지급형태

① 개인연금형

구 분	지급 사유	금 액
피보험자 연금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지급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10회 보증지급)

② 부부연금형

구 분	지급 사유	금 액
주피보험자 자연금	주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의 지급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10회 보증지급)
배우자 연금	주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이후부터 10년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의 10차년도 연금액의 50% 지급

2. 확정연금형

구 분	지급 사유	금 액
피보험자 연금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연금지급개시시의 지급금을 기준으로 해당확정연금 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급

3. 상속연금형

구 분	지급 사유	금 액
피보험자 연금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 개시시의 지급금을 공시이 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연금 으로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단,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책임준 비금을 지급)

- 주)1. 연금지급 개시시의 지급금이란 연금개시연령이전에 발생한 종전보험의 보험금, 해
약환급금, 기타 급여금 등을 말합니다.
2. 생존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하면
생존연금도 변동합니다.
3. 체증형 또는 체감형 선택시 연금액은 10차년도까지 연단위로 체증 또는 체감하며,
10차년 도 이전 연금액은 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 또는 체감률(5%,
10%)로 체증 또는 체감한 금액을 말하며, 11차년도 이후의 연금액은 10차년도
연금 해당액으로 합니다.
4.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주 5 참조)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5. 확정연금형의 경우 해당 확정연금 지급기간이란 다음중 선택한 기간을 말합니다.
- 10년, 20년
- 연금개시일부터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
6. 확정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각 해당 확정연금지급기간 안에 사망시
에는 미지급된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드립니다.
7. 상속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전환일부터 1년후 계약해당일부터 생존연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8.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 피보험자 사망시 그 시점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9.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 공시이율로 부리한 금액
을 드립니다.
10.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
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당월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단, 공시이율은
연복리 3.0%를 최저로 합니다.

【 별표 2 】

(10 2)

구 분		부 리 기 간	지 급 이 자
생존 연금 (제5조)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 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이 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린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보험기간 만기일(단, 이 계약이 더 이상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금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생존 연금 (제5조)	보험금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해약 환급금 (제8조 제1항)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 공시이율의 50% 1년초과기간 : 1%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 1%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약관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일자 계산에 의하며, 소멸시효(제6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